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6. 9. .()	배포	2026. 9. .()
담당부서	공시심사국 공시심사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종환 (02-3145-8422)
		담당자	조사역 김연수 (02-3145-8425)

누군가에게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고 있다면 - 회사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은데다, 또한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 는 식의 허위나 과장된 투자권유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비상장주식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비상장주식 투자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3가지 >

① 투자대상 회사의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해보세요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서류가 없거나, 투자 권유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투자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② ‘**OO파트너스**’, ‘**OO벤처투자**’ 명칭의 업체를 믿어도 되나요?

⇒ 회사 이름만 보고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정식으로 인가·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 등에서 **인가,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③ ‘**상장이 임박했다**’ 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세요

⇒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상장 준비 초기 단계인 경우 상장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거나,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I. 왜 비상장주식 투자는 더 신중해야 할까요?

-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으로 상장 이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지만 비상장주식에 비해 현저히 높은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회사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다양한 공시를 통해 재무현황, 사업내용, 주요 계약 등을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신기술 개발, 신사업 추진, 허위 상장계획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고 다수의 시장 참여자의 거래를 통해 시장가격도 비교적 투명하게 형성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참여자 수 등이 제한적입니다.

일부 장외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유통거래량이 적은 경우에는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어렵고 매수자를 직접 탐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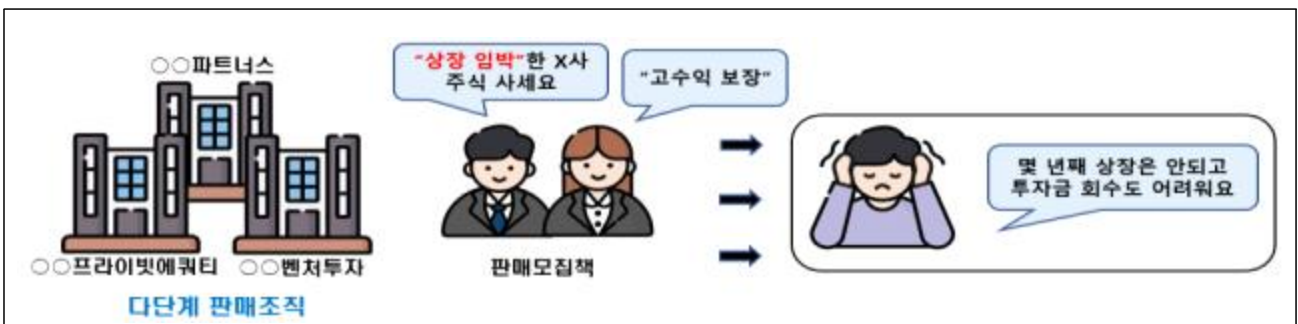
- ▶ 이에 금융감독원은 실제 적발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가 비상장주식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II. 위법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례를 소개합니다

※ 아래 사례는 공시조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색하였습니다.

1 다단계 판매조직의 비상장주식 판매 사례

-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은 약 5,000억원에 상당하는 비상장회사 주식들을 소속 법인을 통해 수년에 걸쳐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 이들은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거나 비상장회사임원의 보유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주식을 확보한 후 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고가로 매도하였으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아 해당 판매법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받았으며, 그룹 대표 등은 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급심이 진행중입니다.
- 확인 결과, 해당 판매법인들은 ‘00파트너스’, ‘00인베스트먼트’, ‘00벤처투자’ 등 금융회사, 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였고, 투자기업 발굴, 판매 등을 분담하는 등 실제 금융회사와 유사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 ☞ 투자를 권유하는 자가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금융회사라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생소한 이름의 법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투자전에 FINE에서 금융회사 인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한 사례

-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 다수의 투자자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판매하면서도 “**현재 개발중인 제품은 혁신적인 항암제로서 FDA 승인 예정이며, 곧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도 이러한 주식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회사는 **영업이익 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투자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투자자들은 이러한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큰 투자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DART에서 증권 신고서를 찾을 수 없다면 투자전에 한번 더 의심해보세요

※ 자본시장법은 비상장회사 주주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회사에 동 사실을 알리고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한 투자 권유에 해당됩니다.

III. 비상장주식 투자전 체크리스트

‘한번 더 확인하고, 천천히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비상장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작은 의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권유자의 설명만 믿지 말고,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객관적인 공시자료와 관련 정보를 스스로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DART에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dart.fss.or.kr)에서 회사명을 검색하면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신뢰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 ❑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주주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DART에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 DART에서 「공모정보 메뉴」 검색 등을 통해 증권신고서상 발행조건, 투자 위험요소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가 진행 중이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적인 투자권유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DART

회사명: [선택] | 회사명/증권코드 입력 [검색] [ENGLISH]

최근공시 | 공시서류검색 | 기업개황 | 공모정보 | OpenDART | 공시업무·제도 | DART 소개

공모정보

- 공모게시판**
- 발행공시 검색
- 오장·매출 실적
- 성악 실적(지분증권)

공모게시판

공모정보 > 공모게시판

[도움말]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금융증권]

회사명: [회사명/증권코드 입력] | 증권종류: [선택] | 검색: [Q 검색]

조회건수: 15

번호	발행회사명	보고서명	증권의 종류	정액일	접수일자
1	[회사명]	[당첨제출요구][기대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보통주	2026.07.29~2026.07.30	2026.05.21
2	[회사명]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	2026.07.30~2026.07.31	2026.07.28
3	[회사명]	[기대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보통주	2026.08.03~2026.08.04	2026.07.14
4	[회사명]	[당첨제출요구] 증권신고서(지분증권)	보통주	2026.08.03~2026.08.04	2026.05.21

2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자에 대하여 확인해보세요

- 투자를 권유한 자가 금융회사와 같은 사명을 사용하더라도 이들은 사명만 유사한 무인가 업체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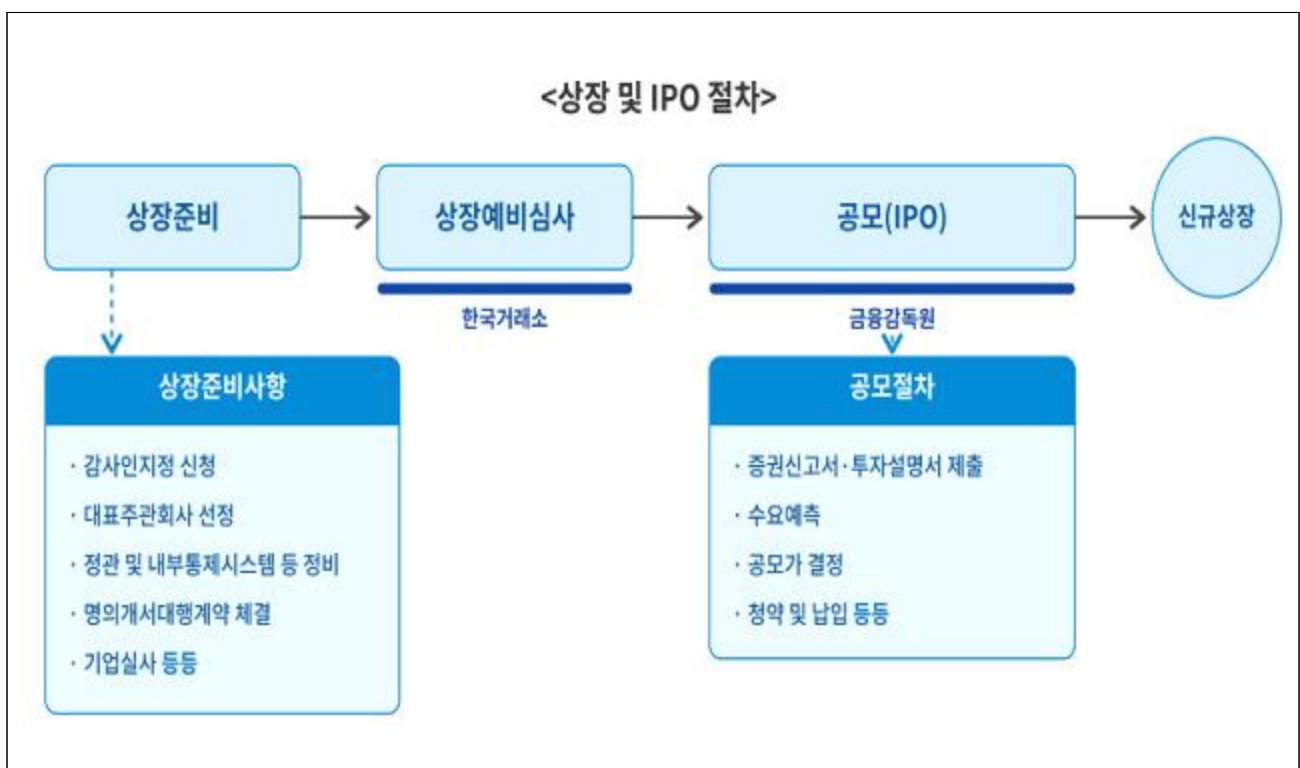
▶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에서 회원사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상장 임박”이라고 홍보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보세요

- 비상장주식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표주관회사 선정, 주식 전자 등록, 지정감사인의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대표주관회사(증권사) 선임,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명부 작성 관리 등을 맡기기 위한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상장이 임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비상장회사에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기관 등에 교차검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주관회사란 기업실사, 공모가 산정, 청약배정을 주관하는 등 상장 절차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여야 하며 주로 증권회사가 선정됩니다. 투자권유자가 주관회사라고 언급한 회사가 있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 검색하여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주식의 전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회사라면 실제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SEIBro, seibro.or.kr) 「기업기본정보」 메뉴에서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 및 전자주권 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KIND(kind.krx.co.kr)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회사 목록을 공개하고 있고, 예비심사가 승인되어 IPO를 진행하고 있다면 DART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V.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제보해주세요

- ①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DART에 회사명을 검색하여도 증권신고서 혹은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주식을 판매하는 업체의 이름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로 의심될 경우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 또는 제보방법>

- ▶ (유 선)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 (방 문)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방지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